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-47호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(‘24.1.23. 공포)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(안 제9조의8 신설)
- 나.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절차 마련(안 제9조의9 신설)
- 다.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(안 제9조의10 신설)
- 라.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(안 제9조의11 신설)

- 마.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(안 제9조의12 신설)
- 바. 보호조치 운영·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(안 제9조의13, 안 제9조의14 신설)
- 사.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(안 제9조의15 신설)
- 아.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(안 [별표9] 개정)

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cc.go.kr>)를 참고 바랍니다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
- 전자우편 : njkwon@korea.kr
- 팩스 : 02-2110-015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
(전화 02-2110-1645, 팩스 02-2110-01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